

2018년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 1.



해양수산부

목 차

I. 해양 분야

- | | |
|-------------------------------|---|
| 1. 국내 최초의 무인선 개발이 완료됩니다. | 1 |
| 2.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R&D를 지원합니다. | 2 |
| 3. 마리나 창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 3 |
| 4. 생존수영 교육과 해양안전체험교육이 확대됩니다. | 4 |
| 5. 해양오염사고 비상매뉴얼 관리가 강화됩니다. | 5 |
|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6 |
| 7. 해양예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7 |

II. 수산 분야

- | | |
|------------------------------------|----|
| 1.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9 |
| 2.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10 |
| 3.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를 높이고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11 |
| 4.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합니다. | 12 |
| 5. 수산물 유통단계를 효율화합니다. | 13 |
| 6.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확대됩니다. | 14 |

7.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이 확대됩니다.	15
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지급합니다.	16
9.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합니다.	17
10. 냉동꽁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됩니다.	18

III. 해운해사항만 분야

1.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을 종합 지원합니다.	20
2.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1
3.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됩니다.	22
4. 국민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을 점검합니다.	23
5.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항로지원을 확대합니다.	24
6. 예선업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25
7. 선박 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 됩니다.	26
8.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됩니다.	27
9. 해외항만시장 진출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8
10.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	29

I

해양분야

1. 국내 최초의 무인선 개발이 완료됩니다.

해양개발과(☎ 044-200-5244~5)

**원격제어로 해양조사 및 감시가 가능하고 자율운항 시스템이
접목된 첨단 소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됩니다.**

-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운항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해양감시 및 조사용 무인선 최종 시제선*** 제작이 '**18년 상반기 완료**'됩니다.

* 전장 8m, 폭 2.4m, 총 톤수 3톤, 최대속도 47노트

- 제작 완료된 무인선*은 **실해역 시험과 성능 개선**을 통해 핵심기능을 고도화하고, **시연회**를 통해 무인선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011~2018, 사업비 270억)

- '19년부터는 공공분야에서 기존 유인 조사선과 감시선이 수행하던 해양 조사 및 감시임무에 **무인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인선 주요 활용분야>

활용 분야	주요내용
해양조사	해양환경 조사, 수산자원 모니터링, 적조 예찰 등
해양감시	불법조업 세력 감시, 경비정과의 협력 단속 등

2.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R&D를 지원합니다.

해양정책과(☎ 044-200-5235)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비율(18년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합니다.**

-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기반구축과 사업 아이템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 과제가 선정되어왔으나, 2018년부터는 40%를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마리나 창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 해양레저과(☎ 044-200-5255)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및 마리나 정비업 신설, 보험제도 개편 등 마리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 마리나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해양 레저 특화 대학 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 및 창업 설명회 개최 등 청년의 고소득 마리나 창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 아울러, 현재 마리나선박 승선 정원 1인당 20만원 대인 **보험료를 10만 원대로 인하하고**, 인명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편합니다.**
-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을 추가하여 마리나제조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수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 **선수금 제도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향후 조성될 토지 등을 이용 하려는 자들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 6월말부터 시행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때 조성 토지 등의 가격 · 면적 · 위치 · 상태 ·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선수금 지급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선수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생존수영 교육과 해양안전체험교육이 확대됩니다.

해양레저과(☎ 044-200-5251),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생존수영 교육(34→50개소)을 강화하고, 워터파크 시설내에 해양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합니다.

- 체험교실과 지역관광, 생존수영을 하나로 묶은 '복합형 체험교실'을 '17년 상주보, 낙단보에서 '18년 울주 진하 해수욕장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확대('17년 34개소 → '18년 50개소)하고,

* (프로그램) △물과 친해지기(공포심 없애기), △물에 뜨기(배면뜨기), △호흡하기 (음파호흡), △체온유지(웅크리기) 등 자기구조법 및 심폐소생술 등 타인구조법

- '생존수영 배워보기' 책자를 발간하여 자체, 교육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1661-2280, 1577-2281) 또는 해양레저포털 누리집(www.oleports.or.kr)을 통해 신청

- '18년 1월부터 천안상록리조트 워터파크(아쿠아피아) 시설내에 해상생존 체험장을 운영*하여 해양활동 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구명조끼 착용방법, 구명뗏목 작동법 및 운용법, 생존수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18.1월~2월)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워터파크로 운영 확대 추진 예정('19년~)

- 또한, 해양안전전시장을 운영하여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구명장비 등을 보기 쉽게 전시하고, 구명장비 사용법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구명용품(구명조끼, 구명뗏목, 구명부환 등), 구명신호기(자기발연부신호, 신호홍염, SART, EPIRB, 자기점화등 등) 등 20여종 및 사용법(영상) 소개

5. 해양오염사고 비상매뉴얼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이 '18년 5월 1일 전면 시행됩니다.
 -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매뉴얼(오염비상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또한,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환경 관리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해양생태과(☎ 044-200-5315~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대규모→중규모 이상)되고, 지역계수가 세분화(2→4단계)됩니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3월 전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부과되어 해양 개발사업의 약 90%가 면제되고 있으며, 지역계수도 단순하여 합리적인 해역 이용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유수면 내 개발·탐사·채굴사업, 바다골재채취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금 부과

-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협력금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협력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제곱미터당 부과금액도 종전의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길이 150m 또는 면적 3천m² 이상의 시설물·공작물 설치, 면적 1천m² 이상 매립, 면적 5만m² 이상 식물 재배·제거 등

- 또한, 개발해역별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라 협력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지역별·개발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계수를 세분화*(2→4단계)하였습니다.**

* (現) 항만구역(2), 항만구역 외(4) → (改) 항만·어항(2), EEZ(3), 법정 보호구역(20), 기타(6)로 구분, 매립행위에 대한 가중치(×2) 부여(항만·어항 제외)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해양 예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051-400-4387)

해양정보를 상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보방송 「On바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박운항정보를 항로별로 세분화합니다.

-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하여 내일의 바다정보, 해수욕·바다낚시 적정 여부 등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예보방송 「On바다」의 정보 전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8년부터는 전문 해양캐스터가 직접 알기 쉽게 해양정보를 전달합니다.

- 또한,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7개 권역별로 제공하던 선박운항지수(바닷물의 흐름, 파랑, 바람 예측 자료*)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 항로별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제공합니다.**

* 물결과 바람이 잔잔한 1단계부터 파도·바람이 강해 선박 운항이 어려운 4단계까지 구분

** 새벽(0시~6시), 오전(6시~12시), 오후(12시~18시), 밤(18시~24시)

- 아울러, 현재 3개(수영, 전곡, 왕산) 마리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해양정보를 **목포, 통영, 여수(소호) 마리나를 포함하는 6개 마리나로 확대하여 해양 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 '18년 6월부터는 여객수요를 고려하여 국외로 연결되는 **부산~대마도, 부산~후쿠오카 항로에 대한 해양정보도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해양예보방송>해양방송>항행통보>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해양정보포털>해양생활>선박운항지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수산 분야

1.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른 어촌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됩니다.

- '18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어가 당 60만원이 지원되고,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어 '20년에는 70만원이 지원됩니다.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km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섬)

**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12년)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참고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로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12 ~ '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소식바다> 보도자료> 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산정책과(☎ 044-200-5432)

어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감면에 따라 어업 경영 여건이 개선됩니다.

- '18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세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 * 「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20톤 미만 어선과 10만m² 이내의 어업권, 4만m² 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 또한, 1만m²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소식바다> 보도자료> 2018년부터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 대폭 확대된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를 높이고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3)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를 지원중이나, 낮은 지원 단가에 따른 어업인들의 자부담 과다로 **활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를 **인상(7→10만원/日)**하고, **자부담비율을 인하(30→20%)**합니다.

* 정부부담률 상향 :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 또한, 어촌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취약가구는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시설)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①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와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② 어촌 거주자 및 사회시설의 경우, 만 65세 이상가구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경로당

4.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3)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2%)로 융자해 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산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이었으나,
 - '18년부터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까지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 수산정책>2018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산물 유통체계를 효율화 합니다.

유통정책과(☎ 044-200-5443~4)

**수산물을 산지에서 집적하여 전처리 가공을 통해 상품화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확충하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 수산물을 산지에서 집적하여 전처리 가공을 통해 상품화하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거점유통센터**는 '17년까지 전국에 5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 '18년에는 60억 규모 3개소를 설립하기 위해 국비 36억원을 확보하였고, 3개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부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운영중인 산지거점유통센터 : 속초·제주('13 ~ '15년), 완도·고성·경주('15 ~ '17년)

● 또한, '18년부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본격 착공(1개소, 인천)함에 따라 생산자단체 중심의 新유통경로^{**}를 구축하여 기존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통해 수산물 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권('16~'19), 호남권('18~'20)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로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거점분산물류센터를 직접 연계하여 수산물을 집적·상품화한 후 소비지로 판매하는 유통시스템

6.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확대(교육의무화)됩니다.

어업정책과(☎ 044-200-5516)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2배로 확대(최대 2년)되고,
재허가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 사유별 제한기간도 2배로 확대됩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7 >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제한기간 (종전 → 확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 2년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1년 → 2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1년 → 2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1년 → 2년
5.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6개월 → 1년
6.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 1년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개월 → 10개월
8.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개월 → 10개월

- 또한, 어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재허가 신청 전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어업허가 취소사유에 따라 4시간(제5호 ~제8호) 또는 8시간(제1호~제4호)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세부적인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 개발원장이 정함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이 확대됩니다.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

냉동·냉장 새우가 지정검역물에 추가되고, 자연산 수산생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 2018년 4월 1일부터 지정 검역물*에 냉동·냉장 새우가 새롭게 추가(기존 : 수산생물제품 중 가공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되어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 자연산 수산 생물을 수입하거나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으로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 어류·패류·갑각류, 수산생물제품 중 가공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이에 따라,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냉장 새우 및 자연산 수산생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지급합니다.

어촌어항과(☎ 044-200-5662~4)

영어(營漁)경력 3년 이내의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초기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어업경영주는 14.2%에 달하는 반면, 40세 미만은 2.4%(1,303명)에 불과하여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귀어인의 어업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영어정착 지원을 실시합니다.

- 귀어자 추이 : ('14) 978 → ('15) 1,073 → ('16) 1,005
- 40대 이하 귀어자(비중) : ('14) 186명(19.0%)→ ('15) 207(19.3)→ ('16) 188(18.7)

- **40세 미만의 면허 · 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중 어업 의지가 높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받은 **영어정착 지원금은**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신청 대상은 어촌이외 지역에서 아주한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자 또는 예정자이며, 맨손어업 창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합니다.

원양산업과(☎ 044-200-5366~7)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융자 지원을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원양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이 **중고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2017년에는 어선 신조(新造), 설비 현대화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하였으나, 사업지침 개정으로 2018년에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신조대체(융자 70%, 자담 30%), 중고선 대체(융자 80%, 자담 20%), 설비현대화 (융자 100%)
-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원양어선의 **신조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원양선사의 경우 담보 및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참여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중고선 대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중소 원양선사의 참여 증가가 예상되어 노후 어선의 비율도 감소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말 기준 2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은 전체 원양어선(255척)의 87.5%(223척)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소식바다> 새소식> 공지사항> 20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냉동꽁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됩니다.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7)

냉동꽁치 조정관세가 소폭 인하(28→26%) 됩니다.

- '18년 1월 1일부터 냉동꽁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기존 28%에서 26%로 2%p 인하됩니다.
-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교란 또는 생산기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수입품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관세법 제69조)하는 제도로서, 수산물은 냉동 명태, 냉동 꽁치, 냉동 오징어 등 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냉동 꽁치 조정관세 인하는 식탁 물가 안정은 물론, 냉동꽁치를 주요 미끼로 사용하는 갈치 생산 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해운·해사·항만
분야

1.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을 종합 지원합니다.

해운정책과(☎ 044-200-5722)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금융을 포함한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One-Stop으로 서비스합니다.**

-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운산업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8년 7월 1일 출범합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및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 법정 자본금 : 5조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 되었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One-Stop으로 서비스하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해운정책과(☎ 044-200-5715)

**선령 20년 이상 국적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합니다.**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우선 3년간 ('18~'20년) 시행하되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12~'2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 0.6), 석유제품/케미칼 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 컨테이너선(0.9), 원유운반선(0.6), 일반화물선(0.6), 자동차운반선(1.0), 철강재운반선 (1.8), 케미칼운반선(5.0), 풀컨테이너선(1.1)

3.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됩니다.

해운정책과(☎ 044-200-5721)

'17년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대만 크루즈의 입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갑니다.

- 먼저, 최대 여행사인 라이언여행사 주관으로 프린세스 크루즈 선사의 **Majestic Princess호**(14만톤, 여객정원 3,560명)가 2018년 3월 26일 대만 기릉항을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3월 30일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를 타고 입항하는 3천 5백여 명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남천동 벚꽃길 등 부산지역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스타크루즈 선사의 **Aquarius호**(5만톤급, 여객정원 1,511명)가 여수에 두 차례(**4.22, 6.24**) 입항합니다. 이들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등을 관광할 계획입니다.
 - 대만 관광객은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8년 하반기에는 모항과 기항지에서 관광객을 나누어 모객하고 각 기항지별로 관광객이 승하선하는 형태의 준모항 운항(3항차 이상)을 협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들도 크루즈를 타고 대만과 일본을 갈 수 있는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4. 국민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을 점검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8)

국민과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점검체계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객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8년부터 (가칭)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 **對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15명)을 위촉하고, 위촉된 점검관은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3개의 권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 국민안전점검관 구성 >

구분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지역	인천.경기.충남	전북.전남	경남.부산.제주.경북.강원
인원	5명	5명	5명

* 선박 관련 관심.경력.자격자, 여객선 수시 이용자 우선 선정

- 국민안전점검관은 현장 모니터링 등 **개별활동**, **민관이 함께하는** 여객선 **합동점검**, **공동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시된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재정비 하는 계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국민안전점검관 공모('18.2)→ 선정 및 위촉('18.3)→ 사전교육 실시('18.4)→ 국민 참여 합동점검('18.5, 11월)→ 공동 워크숍('18.12), 우수자 포상

5.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항로지원을 확대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1)

연속적인 적자(2년)를 기록하는 항로는 사업포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육지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도 추진됩니다.

- 도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 항로와 운항 증편이 필요한 항로**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종전에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기간 동안 항로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 '18년 4월 1일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는 항로 단절 이전에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합니다.**
- 또한, 섬과 육지간 1일 생활권을 구축(1일 2회 왕복운항)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항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지원합니다.
 - 종전에는 자체 예산으로 1일 생활권 구축 등을 지원하여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나, '**18년부터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여 자체와 함께 1일 생활권 구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선업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5772)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를 유지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예선의 운용 선령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됨에 따라,
 -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 됩니다.
 -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박 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6211)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과 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이 '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지방청(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이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라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되어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에 제출

-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계망(유료)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

8.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참여가 확대됩니다.

항만개발과(☎ 044-200-5933~4)

**신항만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 건설사업을 활성화합니다.**

- 그 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18년 5월 1일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종전 수출입 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되는 항만에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까지 확대합니다.
 - 아울러, 신항만건설 활성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신항만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 범위, 실시계획에 따른 관계법률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도 정비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해외항만개발사업 관련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2)

주요국별 항만사업 발주정보, 시장동향, 투자환경 등 해외항만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7년 도입되었던 해외항만개발사업 정보서비스 시스템(www.coscop.or.kr)의 기능을 컨텐츠의 다양성, 신속성, 접근 편리성 등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18년 1월부터는 국내외 항만·물류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및 기존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위클리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동향 정보, 항만 현황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18년부터는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항만사업 발주 정보, 국가별 법·제도, 투자환경, 외국의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BMI, CIC 등) 자료 등을 추가합니다.

* BMI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IC :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 또한, 매월 1회 제공하던 정보를 '18년부터는 매주 1회 제공하고, 해양 수산부 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10.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8)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여 시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양수산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사용 부담 및 특혜 의혹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18년 1월부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신기술 등**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 항만시설(「항만법」), 어항시설(「어촌어항법」), 연안정비사업(「연안관리법」)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

- 또한,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사 일부구간에 시험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시험시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 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